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86호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곡물수분측정기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제정

- 다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규정하고있는곡물수분측정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2.1 제1장곡물수분측정기형식승인기준
- 2.2 제2장곡물수분측정기검정·검사기준

3. 부칙

- 3.1 시행일
 -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 기타자세한사항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 → 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에서(504)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96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외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승강기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및 매년 발생하는 동일·유사 승강기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불명확한 항목에 대한 명확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함

2. 주요 내용

- 승강장문 개방기 통일 및 부주의한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키에 주의 사항 표시 부착의 무등
- 문 외부 충격에 의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강도 기준(450J) 규정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틈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97년이 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매한 125mm 틈새 규정 소급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과 핸드레일 속도 차이 정량적으로 규정
- 덤웨이터의 문이 닫힐 경우 기계적인 장치가 먼저 작동한 후 전기적 장치가 작동, 열릴 경우 반대순으로 작동

3. 세부 개정 내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인적 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자세한사항은

기술표준원안전정책팀(경기도과천중앙동2번지, 전화번호: 02-509-7238~41, FAX: 02-509-7305)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 내용을업계및 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안전성확보와안전기준의비검을개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음식물처리기등 4종의전기용품안전기준을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전기레인저K60335-2-6취치형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이와유사한전기기의개별요구사항의용어정정을위한개정

나. [별표2] 참고적용안전기준의음식물처리기K60335-2-16음식물처리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을[별표] 강제적용안전기준으로변경하고, 건조, 탈수, 전열장치를가진기기의부탁조건개정

다.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전기오븐레인기K60335-2-36상업용디스펜싱기및 자동판매기에대한개별요구사항의물 넘침시험조건에대한오정정을위한개정

라. [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의대류형오븐K60335-2-42상업용전기강제대류형오븐, 스팀형조리기 및스팀대류형오븐기의개별요구사항의용어변경을위한개정

3. 의견제출

불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제출기한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전기용품안전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07.07.24.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안전기준을열람하시려면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506)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기술표준원전기용품안전팀연락처

○ 주소: 경기도과천시중양동2번지

○ 전화번호: 02-509-7242~5 (FAX: 02-507-6657)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232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및 시행규칙제4조의2의규정의의하여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7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정2007. 05. 29. 기술표준원고시제2007 - 232호

※ 기타자세한사항은

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 →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에(308)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